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1475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1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4. 2. 1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최정운

별지